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 산학협력단 업무중 산업자
원부 및 중소기업청등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중소
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중기산학협력센터”라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중기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이하“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에 산학 공동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하“기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대학·기
업간 협력에 의한 교수·학생의 중소기업 현장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각종 기업지원사업”(이하 “기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의 각종 지
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대학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및 사업) 산학과 관련된 기술지원 사업은 중기산학협력센터에서
주관하며 중기산학협력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

1.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
2. 기술지원사업 수행
3. 기업지원사업 수행
4. 기타 중소기업청 및 정부기관시행 기술개발 및 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수행

제5조(관련부서) 중기산학협력센터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 둔다.

제6조(센터장) ①중기산학협력센터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
다)을 둔다.

②센터장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중기산학협력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중기산학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의 선정· 시행· 평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기산학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①중기산학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참여기업의 공동부담금
3. 본대학 지원금
4. 기타 지원금

②재정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재정은 사업별로 분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중기산학협력센터의 각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중인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